

이 자료는 2016년 3월 29일 10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

2016. 3월

기 획 재 정 부

순서

[제1편 201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 I. 재정운용 여건 2
- II. 201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4

[제2편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 I. 예산안 편성지침 개요 27
- II. 세입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29
- III.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30
- IV. 각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보완 55

순서

[제3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I. 기금운용 여건	60
II.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61

[제4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I.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	67
II. 기금 자원배분 개선 및 건전성 제고 기여	69
III. 수입계획 작성지침	70
IV. 지출계획 작성지침	74
V. 협의 및 보완	85

제1편

201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I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 경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나, 금융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 병존

-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 전망
 - 미국은 고용시장 개선, 저유가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유로존은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나, 일본은 소비세 인상('17년) 등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 중국은 소비·내수 중심 구조전환에 따라 성장 둔화세 지속 전망
- 다만 글로벌 위험기피 성향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자원국 불안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IMF, '16.1월)

	'14년	'15년	'16년	'17년
세 계	3.4	3.1	3.4	3.6
- 미국	2.4	2.4	2.6	2.6
- 유로	0.9	1.6	1.7	1.7
- 일본	△0.0	0.5	1.0	0.3
- 중국	7.3	6.9	6.3	6.0
- 신흥국	4.6	4.0	4.3	4.7

□ (국내경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점차 개선되고 수출부진이 완화될 전망

- 양호한 고용여건, 가계소득 확충, 규제개혁 가속화 등에 따라 민간소비 및 투자가 개선될 전망
- 수출은 세계경제 및 교역량의 완만한 회복세, 수출활성화 대책, 新산업육성 등 정책노력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

□ (세입여건) 경기 여건과 세입확충 노력에 따라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일부 불확실성 지속

-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보 노력으로 최근 세수부족 상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
- 다만, 최근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 확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

□ (세출여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및 미래 대비 지출이 증가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도약을 위한 투자 요구도 증대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서민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소요가 지속 증가
- 구조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 필요

□ (수지·채무)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 제기

- 불확실한 세입여건 하에 복지·의무지출과 미래 대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
- 재정이 경제의 최종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 필요

경제부흥 · 희망사회 · 국민행복

자원배분의 중점

-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로
서민생활 안정
- 창조경제 · 문화융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안보 · 치안서비스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재정운용방식의 혁신

- 재정운용의
자율성 · 책임성 강화
- 재정운용 전단계에 걸친
효율성 · 투명성 제고
-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

〈 기 본 방 향 〉

- ◆ 구조개혁과 내수 · 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역동성 확산
- ◆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 경제 · 사회구조 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①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역동성 확산

-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24+1 핵심 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 가시화에 역점
-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 여건 개선으로 내수·수출의 균형있는 성장을 견인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여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촉진

②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소요를 억제하여 지출구조의 효율화 도모
- 공적연금·사회보험 확대, 복지지출 증가 등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 및 관리

③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성장 흐름 등에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
- 국민·현장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정책 체감도 향상
- 재정사업의 소단계(life-cycle)에 걸쳐 효율성 제고 및 관리강화

2

재원배분의 중점

①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로 서민생활 안정

-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고용영향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를 통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 * (각 부처 시범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 예산요구 → 전문기관 검증 (전문기관) 주요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 평가결과 활용
-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체감도 향상

② 창조경제·문화융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프리존과 연계하여 지역별 전략산업 지원
- 콘텐츠 소비·구현 플랫폼 조성 등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완료하고 가상현실(VR) 등 ICT와 결합한 첨단 문화산업 집중 육성
-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신시장·유망품목 발굴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융합기반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

③ 안보·치안서비스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 주변국과 북핵 대응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투자에 중점
- 테러 위협에 선제적 대응, 재난관리 강화 및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치안서비스 강화

3

재정운용방식의 혁신

1 재정운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① 강도 높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수준 구조조정하여 예산 요구
 - * 부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은 별도 통보 예정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 절감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국가 주요정책에 투자
- 신규사업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추진
- 구조조정 우수 또는 미흡부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증감 등 인센티브 또는 재정적 불이익 부과

②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사업구조 개편

-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예산 낭비소지 제거
 - 특히, 쏠부처 일자리 사업을 재검토하여 대폭 정비
- 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강화
 - 사업출연금을 기관운영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
 - 사업출연금은 결산 결과未집행분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 국가지원 시설물에 대해 국고지원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국가가 소유하는 '지분취득' 방식 도입

③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

-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편성 등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예산편성과 연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의무경비 편성을 위한 이행장치 마련 등 제도개선도 병행

④ 실효성있는 재정규율 확립 및 장기재정위험 관리 강화

- 의무지출 과소편성 및 누락, 협의된 재정지원기준 위반 등 재정규율 미준수시 기본경비 감액 등 불이익 부과
-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 유발시, 해당부처의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
-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검토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금·사회보험 확대, 복지지출 증가 등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적 관리 및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화 추진

기대효과

- ◇ 관행·점증적 재원배분에서 탈피하여 **핵심정책**에 역량 집중
- ◇ 개별 지자체의 이익과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감안한 장기 시계의 재정운용으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기반 마련**

② 재정운용 소단계에 걸친 효율성·투명성 제고

① (재원) 세입기반 강화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심층평가를 통해 조세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역외소득을 양성화하여 세원 투명성 제고
-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운영의 수익성 제고 노력 강화
-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공동활용 및 시설통합 방식의 개발을 늘려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

② (기획·편성) 사업의 진입·퇴출 관리 강화

-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요구 금지
 - *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제도('16년 도입): 100억원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평가
-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일몰 기본전제)' 결과에 따라 사업 폐지 등 예산 반영
- 일자리, 복지사업 등 수혜대상·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사업 난립 방지

③ (집행)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 제고

- 10년 만에 대폭 정비된 세출비목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 관행적인 예산 전용 및 부적정한 지출 차단
- 사업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비효율·낭비 요인을 발굴하는 ‘집행현장조사제’ 도입

④ (평가) 재정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재정사업평가(자율평가+지역사업평가+R&D평가)로 개편하여 평가의 비효율성 제거
- 심층평가 방식을 제도개선 위주의 기존 사업군별 평가외에 성과가 미흡한 개별사업도 평가하여 예산편성과 연계
- 재정혁신지표를 도입하고 부처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 부여

기대효과

- ◇ 세입기반 확대, 신규 재원 발굴로 지출소요 대응 기반 조성
- ◇ 제도·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재정누수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생산성도 제고

3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

① 국민체감 · 현장중심의 재정운용

- 일자리 등 민생안정사업은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 정책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
 - * '고용복지+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대학창조일자리센터' 연계 강화
- SOC는 완공 위주로 집중 지원하고,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조기 확충으로 국민 편익 향상
- 최종수요자인 민간에 지원되는 기준(실집행률)으로 관리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예산편성과 연계

② 참여 · 공개에 기반한 재정운용

-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국가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
- 재정교육 확대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 정책고객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장수요를 파악하고 일반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환류

기대효과

- ◇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 체감도 제고를 통해 재정운용 거버넌스의 저변 확대

1. 복지 분야

1. 투자 중점

-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소득계층별·복지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정착시키고
희망키움·아동발달지원계좌 등 빈곤층 재산형성 지원
 - 긴급복지, 사례관리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강화
 - 맞벌이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보육과 임신·출산 지원 강화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기요양보험 등 안정적 노후 지원
- ☐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공공) 지속 공급 및
민간 역량을 활용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
-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
 - 만성·중증질환 관리, 취약지 분만시설, 예방적 질병관리시스템 구축
 - 신약·신의료기기, 해외환자 유치, 의료서비스 수출 등 집중지원
-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금·의료비 지원 강화 및 호국·
보훈정책 뒷받침

2. 지출 효율화 방안

- ☐ 복지지출 범위·분류체계 개편으로 수혜자·성과중심의 지원 강화
- ☐ 연금재정 추계 정비 및 안정성·수익성제고를 위한 자산운용체계 개선
- ☐ 건보 재정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지출
관리 강화, 국고지원방식 개선

〈 일자리 〉

1. 투자 중점

- ☐ 청년·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로 고용률 제고
 - 고용디딤돌 등 질 높은 일자리 연계 강화, 일 경험 기회 확대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 집중 지원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경력 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등 여성 친화적 고용여건 조성
- ☐ 노동개혁의 현장 안착 유도를 위한 지원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임금채불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노력 강화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임금피크제 확산 노력 지속
- ☐ 직무능력 중심 문화 확산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
 - 일·학습 병행제도, 직무능력 평가제 확대 등 스펙보다 능력 위주의 채용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지속
 - 고용복지+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해소 지원 확대

2. 지출 효율화 방안

- ☐ 취업 효과, 장기근속 등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사업을 재설계 하여 일자리 투자사업의 체감도, 실효성 제고
 - 일자리사업 연계·내실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 각 부처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시 사전협의 의무화를 통해 사업 중복 방지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사업 지원 축소

2. 교육 분야

1. 투자 중점

- ☐ 사회수요 맞춤형 창의·전문 인재 양성 지원
 - '16년 전면 도입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내 정원이동, 학사구조 개편,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 등 대학의 자발적인 양적·질적 구조개혁 유도
- ☐ 先취업자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및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 後진학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일·학습병행을 활성화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심으로 직업교육 확대 개편
-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 대출 및 일반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2. 지출 효율화 방안

- ☐ 핵심교육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시도교육청이 의무지출, 국가시책사업 등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고등교육 지원사업 내실화
 -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 선정·평가지표 개선 등 효율화 방안 마련
 - 국립대학 시설은 신규 확충보다 개·보수, 재배치 등을 통한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 투자 중점

-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등으로 성장동력 확충
 - 차세대 게임, 애니메이션 등 유망 콘텐츠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등 ICT와 결합한 첨단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
 - 민간의 창의력과 문화 인프라를 문화창조융합벨트에 집약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적극 발굴·육성
 - 지속 가능한 한류 창출 및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으로 문화 벤처기업의 해외 수출 역량 강화 및 관광산업의 저변 확산
- 신규 관광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문화·체육 향유기반 지속 확충
 -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MICE·의료 등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 인프라에 지속 투자
 -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적·경제적 문화격차를 완화하고, 궁궐 등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지속 확대
 - 경기장·진입도로 등 인프라를 적기에 완공하여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세분화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
-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회계간·유형간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4. 환경 분야

1. 투자 중점

-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 투자 지속
 -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지속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황사·미세먼지 등 예·경보 정확도 향상 투자 확대
- ☐ 환경 SOC 교체·개보수 투자 및 환경산업육성 지원 확대
 - 싱크홀·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내구 연한이 도래된 노후 하수관 교체 및 보수 투자 확대
 -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등 환경산업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 ☐ 폐자원 에너지화 등 자원 재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자연환경 이용 투자 등 자연 친화적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 상하수도 사업 투자 내실화
 - 운영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하수도시설 효율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설투자를 축소하고 교체·개보수 투자에 역점
 - 유지보수사업 지원 조건 재설정 및 지자체 책임성 강화
- ☐ 국제유가 하락 및 판매차종 증가 등 국내외 친환경차 시장변화 및 구매자 반응을 종합·분석하여 적정 지원규모 재검토

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 투자 중점

- ☐ 신시장 개척,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중점
 - 중국 FTA 활용 및 이란 등 새로운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확대
 - 유망 소비재·서비스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
- ☐ 창업 초기 기업이 2~5년차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창업 후 상용화, 판로확보 등 어려움으로 기업 생존율이 낮아지는 시기
 - 「중소→중견→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
- ☐ 新 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수요가 많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충하고 태양광 시설·생산자금 지원 확대

2. 지출 효율화 방안

- ☐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하고 발전지역 지원 방식을 개선
 - 석·연탄 가격 합리화를 위해 광해관리공단을 수지차기관으로 지정하고 석탄공사 예산을 석·연탄 가격에 연계하여 지원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 발전원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 도입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사업 효율화
 - 특정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6. SOC 분야

1. 투자 중점

- ☐ 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구축하여 거점간 교통 네트워크 강화
 - 고속도로·국도 등은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주요 철도망이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
- ☐ 타당성이 검증된 시설 위주로 도시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의 편의 제고
 - 혼잡·광역도로, 광역·도시철도, 주차장 등 인프라 시설을 통해 교통 혼잡 해소
- ☐ 도시재생, 노후 산단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
- ☐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및 안전취약 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 ☐ 항만화물 적기처리를 위해 시급한 시설개선 소요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항만배후단지 및 재개발사업으로 경쟁력 제고

2. 지출 효율화 방안

- ☐ 계속사업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적정 투자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핵심사업 위주로 반영
 -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SOC 건설비 및 운영비를 절감 추진
- ☐ 재정여력을 감안해 위험분담형, 손익 공유형 등 다양한 민간 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
 - 수익성확보가 가능한 신규사업은 민자유치 가능성 우선 검토
- ☐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고규격, 과잉설계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연계성 제고로 신규시설 소요를 최소화

7. 농림수산 분야

1. 투자 중점

- ☐ 시장개방 등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업 경쟁력 강화
 -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전략품목 발굴 등 FTA 활용 극대화
 - ICT 융복합 확산, 우수 전문인력 양성, 공동경영체 육성 등 농어업 경쟁 기반 확충
- ☐ 지역별 맞춤형 투자전략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촉진
 - 창업지원 확대,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등으로 우수인력 및 자본의 농어촌 유입 유도
- ☐ 소득·경영 안정을 통한 농어민 삶의 질 제고
 - 발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원 강화, 농지연금 지원 확대 등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
 - 홍수·가뭄, 가축전염병 등 대규모 재난재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재해보험 등 단계적 확대

2. 지출 효율화 방안

- ☐ 구조적 과잉공급 품목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격지지 및 소득보전 등에 투입되는 지출소요 최소화
 - * 예시 : 농지면적 조절 등을 통해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변동직불금 및 시장격리, 양곡관리 비용 등 최소화
- ☐ 정책자금 통폐합 및 취급 수수료 인하 등 정책자금 지원 체계 간소화·효율화

8. R&D 분야

1. 투자 중점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대비 투자 및 창조경제 활성화 유도
 - 신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융합연구·창의적 연구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기업 R&D지원 연계 강화 및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 뒷받침
- ☐ 과학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안전 증진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와 제조업 기술혁신, 수출촉진을 위한 R&D 지원 확대
 - 재난·재해 등 안전분야 R&D 투자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뒷받침

2. 지출 효율화 방안

- ☐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 성과미흡 사업 및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역R&D센터의 지원기준 적용 부처를 확대
 - 장기계속 R&D사업은 지속적으로 일몰을 유도하고, 협약시점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불일치가 최소화되도록 R&D예산을 편성
- ☐ R&D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체계 개선
 - 국방분야 R&D의 효율성 제고 및 민·군 기술 활용촉진 등을 위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사전검토 등 실시
 -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 R&D바우처 및 출연연구기관의 민간수탁 확대 유도

9. 국방 분야

1. 투자 중점

- ☐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강화
 - 핵·미사일 위협 대비 Kill-chain, KAMD 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이버공격 및 테러 등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
 - 성과기반군수지원 등 적정 군수지원으로 현존 전력을 극대화 하고, 신형방탄복 보급 등 전투력 강화
- ☐ 장병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 병 봉급의 '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을 완료하고, 민간조리원 운용 등 질 좋은 급식 제공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통한 부대 적응을 적극 지원
- ☐ 첨단 국방과학기술 개발 및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민군 R&D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융합 시너지 효과 극대화

2. 지출 효율화 방안

- ☐ 병영생활관, 관사 등 군 주거시설에 대한 재정사업심층평가를 계기로 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체계 수립
 - 군 시설물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화, 군 시설 편제체계 수립 등을 통해 사업별·부대별 시설물 소요 불균형 해소
- ☐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을 시설·군수 조달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

10. 외교 · 통일 분야

1. 투자 중점

-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의 양자·다자간 협력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공조를 위한 지원 강화
- ☐ 우리기업 및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신흥 개도국들과의 정상·경제 외교 활동 뒷받침
- ☐ 통일문화·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북한인권 개선 등 실질적 통일 준비를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
 - 탈북민의 조기 정착 및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등 탈북민의 자립을 위한 인프라 지속 확충
 - 통일문화 저변확대,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강화를 통한 통일 의식 제고
- ☐ UN 등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목표와 연계하여 개도국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ODA 사업에 대한 투자 지속
 - 유상·무상, 다자·양자 등 사업 간 유기적 연계에 대한 지원 강화

2. 지출 효율화 방안

- ☐ 남북 여건 변화에 맞춰 남북경제협력 사업 규모와 내용을 조정
- ☐ 개발금융 활용 등 민간 ODA 재원과의 연계 강화
 - 개별 ODA 사업도 민간 및 기업들의 국제사회 공헌활동과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11. 일반·지방행정 분야

1. 투자 중점

- ☐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지역특화프로젝트 등 지역특성·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지역발전시책을 적극 뒷받침
 - 규제프리존 도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 ☐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원스톱·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3.0 생활화를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 既 개방된 공공데이터 품질제고 및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육성 지원
- ☐ 19대 대통령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를 차질없이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성과와 연계하여 포괄보조금(인센티브) 재원배분 방식 개선
 - 문화·복지 등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발전 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이관
- ☐ 특별교부세의 국가정책 연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행사·축제 관련 예산의 효율성 제고
 - 특별교부세 배분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 핵심 국가 정책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전년도 집행내역을 대국민 공개
 -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투자심사 확대 등을 통해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로 인한 비효율 방지

12. 공공질서 · 안전 분야

1. 투자 중점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

-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제고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심리 지원 등 강화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초치안 및 생활법치 확립

-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과학·사이버 수사역량 강화 및 범죄 초기대응 능력 제고

☐ '16년 신설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법률구조 강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구조 및 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

☐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상경비 역량 제고

- 노후함정 개선과 함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장비 지속 확충

2. 지출 효율화 방안

☐ 체류외국인 지원정책 사업에 대한 연계 및 조정 강화

- 개별 부처별로 수행중인 국내 정착지원 사업의 유사·중복을 검토하여 유기적으로 조정

☐ 해경 기존 장비·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중점을 두어 신규 도입 소요 최소화

〈 안전투자 〉

1. 투자 중점

- ☐ 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한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
 - 위험도에 따른 효율적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재해위험지구, 노후 저수지, SOC 등 시급한 보수·보강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
 - 연례적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을 즉각 제거하는 등 긴급한 안전 투자소요도 반영
- ☐ 대형·특수재난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위한 대응체계 구축
 - 전국 4대 권역별 119 특수구조대 본격 가동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단계적 투자
 - 중앙, 동·서해 해양특수구조단의 장비 확충 차질없이 지원
- ☐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속지원
 - 기후변화, 감염병 등 재난 대응 기술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촉진을 위한 펀드도 지속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 국가-지자체-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 국가 현안·시책 소요 (소방헬기등) 지원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토록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 개정
 - 국가 지자체간 안전 인프라 공동 활용 등 협업 체계 강화, 안전예산 사업성과 평가 및 예산편성으로의 환류체계 구축
- ☐ 부처별·사업별 투자우선 순위가 명확히 제시되도록 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내실화

제2편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I

예산안 편성지침 개요

1

지침 목적

- 각 중앙관서의 장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 요구서 작성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점검 항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
 - * 부처 실무자들이 요구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절차, 서식, 작성 요령, 기준·단가 등을 수록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은 별도 배포

2

적용 대상

-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급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적용됨
- 동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위탁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준용됨

3

예산요구 절차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기관 내부 의견 및 각종 이해 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수혜자 등 각계 및 국민의견 적극 수렴
 - 타 부처 소관 사업과 수혜대상·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또는 의견청취 후 협의된 사항 제출
 - * (예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를 거쳐 예산을 요구

□ 첨부서류

-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 수량) 등을 포함하는 소관 예산안 설명자료
- '16~'20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각 연도별 국세·세외수입 전망, 주요 사업·항목·연도별 세출소요)
- '17년도 성과계획서, '15년도 성과보고서(국가재정법 제8조)
-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국가재정법 제13조 및 제34조 제13호)

□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편성한 2017년도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를 5.27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Ⅱ

세입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1

국세수입

- ☐ 대내외 거시 재정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후 징수 가능한 국세 수입액을 계상하고, 관련 법령 개정시 법령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 요인을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
- ☐ 적극적인 국세수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안 작성

2

세외수입

- ☐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전액 계상
 - 국고금관리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징수 또는 수납 하여야 할 수입은 누락하거나 축소 계상함이 없이 총수입액의 전부를 세입예산에 편성
- ☐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요구시 제출
 - 유가증권,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
 - 배당수입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배당정책('14.12월)에 따라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적정한 배당성향 산정기준을 적용
 - 사용료·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
 - 벌금·변상금·가산금·미수채권 등은 실효성 있는 수납률·회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
 -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에 해당하나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 되던 자금을 발굴하여 예산체계 내 흡수하는 방안 마련

[신규사업]

□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

- 2017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 설명자료에 첨부
- 신규사업 총소요는 부처 자율적으로 절감한 재량지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요구
-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계속사업은 중기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
 - * (예시) 대규모 농지조성 사업 신규착공 등은 쌀 공급과잉과 같은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추진
-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 재원대책 마련

-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지출의 증가분만큼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Pay-go 적용)
-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 수반시, 사업 구조조정 등 해당부처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

☐ **공용재산 취득사업**(기존 청·관사의 신·증축 및 사업용 재산 포함)

- 일반회계 소관 공용재산(국유재산법 제6조의 공용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의 취득(매입 및 신·증축 등)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요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적용을 받는 청사건축은 「2017년도 청사 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만 예산 요구
- 대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요구
- 청사 신축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과의 연계**

-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 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 산출내역'을 제출

[계속사업]

☐ 모든 재정사업은 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 사업도 사회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

☐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은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사업규모, 지속추진여부, 투자시기 재검토

☐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 요구

* 보조금·출연금·출자금 등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준용

[유사·중복 사업 조정]

- ☐ 부처간 및 부처내 모든 유사·중복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되, 통폐합으로 인한 국민의 체감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
- ☐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외부기관 지적,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적극 발굴
 - 다수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서로 다른 시기에 추진하기보다는 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
 - 지원대상은 다르나, 지원내용이 유사해 통폐합이 바람직한 사업
 - 지원대상이 같아 상이한 지원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주요 통합사례>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복지부 희망리본사업을 사업목적·대상 등이 유사한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합
-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에서 각각 운영하던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산업인력양성을 총괄하는 산업부 사업으로 통합

- ☐ (부처내 유사·중복 사업) 부처별로 판단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을 적극 발굴
 - 정책여건 변동, 사업방식 변경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 동일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을 가진 2개 이상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업
→ 여유자금이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이관
 - 별도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낮은 소규모 사업 등

<주요 통합사례>

- 기재부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심층평가, 기금 및 부담금 평가 등을 '16년부터 재정사업 평가로 통합
- 문체부의 민속국악원 운영, 남도국악원 운영, 부산국악원 운영사업을 민속국악원 운영사업으로 통합

- ☐ (정비원칙) 201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가 더 크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실국으로 통폐합 추진

□ 신규 사업

- 지방이양 사업 및 보조금법상 지원대상 제외 사업(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은 요구 불가
 - * 단순히 사업명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 사업은 예산 요구 대상에서 제외
-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은 사업인 경우, 심사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
- 신규 보조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및 일몰제 시행으로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평가 강화
 - *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적격성심사 결과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을 요구
- 신규 자본보조 사업은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고보조율은 50% 이하로 검토

□ 자치단체 보조사업

- 현재 국고로 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방이양 추진
- 사전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원
 - 사업계획 공고, 사업자 선정 등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요구(불가피할 경우 세부일정을 예산요구서에 첨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 보조금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사용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
- 자치단체의 재원분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자체 분담분 미확보시 원칙적으로 요구 금지
 - 자치단체 중기 재정계획에의 반영여부, 전년도 지방비 분담 실적 등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

□ 민간보조사업

- 출연금 예산을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 예산은 지원 불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원 가능

- *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 *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 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 보조사업 구조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 우선 추진

— < 구조조정 대상(예시) > —	
i)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
ii)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iii)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iv)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v)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
vi)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외부지적(국회, 감사원 등)이 있는 사업

- 보조사업 평가(운용평가 및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15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중
'17년 폐지·단계적 감축·사업방식 변경 대상 사업
 - '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중 폐지·조건부폐지 대상 사업

<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활용방안 >

평가결과		활 용 방 안
○ 보조사업 운용평가('15)		
폐지	① 즉시 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 미반영 검토
	② 단계적 폐지	▪ 계속사업 진행 등으로 즉각적 폐지는 곤란하나, 사업목적 달성 시점을 명시(일몰기한 설정)
	③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유지	④ 단계적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⑤ 사업방식 변경	▪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수행 또는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
	⑥ 정상 추진	▪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사업성고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보조사업 연장평가('16)		
① 존치		▪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사업성고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② 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 미반영 검토
③조건부 폐지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 세출구조조정 노력 강화

- 지원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

* (예시) 현행 직접보조 → 인센티브 지원, 정액보조, 국가지분취득(토지 매입비) 방식

* 보조기관·단체를 통해 국고 100%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행사비 → 연구용역비는 부처의 직접사업비, 행사비는 위탁사업비로 변경

- 시설보급률 등 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조정, 보조율 차등화

- 실 집행부진 및 성과미흡 보조사업은 구조조정 추진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 축소·폐지

- 일몰 도래 사업, 자치단체 고유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전달기관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 추진

○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한도 등을 이유로 타 회계 지원 요구 금지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운영비 지원은 경영개선 및 자구 노력 우선 추진을 전제로 정부지원 여부·방식 등 결정

[기본원칙]

- ☐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 ☐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
- ☐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

[예산연계 기준]

통합 재정사업평가

- ☐ 평가 등급*에 따라 예산 요구 및 편성

*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점검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기준

- ‘보통’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 성과지표가 부실한 경우는 구체적인 지표개선 계획 등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 결정
- ‘미흡’ 등급 사업은 평가대상사업 총액의 1%이상 범위에서 구조조정하되, 미흡사업 위주로 구조조정하여 예산 요구
 - 다만,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삭감이 곤란한 경우 제도개선 대책 시행을 전제로 예산규모 조정 가능
- 등급에 관계없이 재정여건에 따라 동결 또는 감액 편성 가능

- ☐ 평가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에서 성과 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이행상황을 점검
-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시 감점 및 예산 편성시 감액 가능

심층 평가

☐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재정지원 타당성 부족, 사업성과 미흡 등 지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폐지 또는 지원규모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
- 유사·중복으로 평가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통·폐합 방안 마련

☐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 후속조치계획 미수립 또는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폐지 또는 감액 가능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 단,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지표, 목표치 등)을 소관 주무부처에 제출
 -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성과계획을 포함하여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작성
-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정부안 확정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시에는 예산요구서 기준이 아닌 확정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수정

□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등

-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양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으로 4월중 통보 예정
- 예산의 프로그램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일치화시켜 운영

□ 예산안 편성결과 반영

- 정부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예산금액·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성과계획서도 수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
 - * (예시) 예산 증감시 성과계획서의 예산내역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목표치 등 연계·수정, 사업내용변경(보조율 증감, 지원단가 및 물량 변경 등)시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별 사업개요 수정

□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증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단위사업 기준)에 대해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 운영
 - 신규사업의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산식 등을 성과계획서 별첨 자료에 작성하여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규사업의 성과지표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시 활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참고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본 원칙]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관련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 ☐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 반영 가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요건]

- ☐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사업
 - *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재정지출의 합
-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 반드시 참조)
 -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 및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 남북교류협력,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난예방·복구, 안전 관련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실익이 없는 사업 등

[세부 지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전연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 매년 2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작성·제출(예타 운용지침 제15조~제27조 등 참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면제 절차에 따라 신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2, 예타 운용지침 제11조 참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판정결과에 따라 예산 검토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13조)
 - * 주무부처에서 예타면제 요구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 선정 가능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간 상호연계성이 큰 경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가능(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10조)
 - *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 예상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총사업비를 과소계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세부지침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 부과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참고

[기본 원칙]

-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소요 예산을 요구
-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先 총사업비 변경, 後 예산반영」 절차 준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
 - 500억원 이상 토목 및 정보화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 국고에서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도로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세부 지침]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요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
 - 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등은 각 비목별 세부지침을 적용
 - * 계속사업의 경우 dBrain 상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요구 및 검토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예산 요구
 -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각의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과 변경여부를 협의
 -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 경우 예산안에 연차별 적정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조정을 함께 검토
 - 예산소요액은 총사업비에 반영된 금액 범위내에서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된 예비비(10%)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제외하여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 계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 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자율조정 후 예산 요구
-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은 예산안에 완공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31일까지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
 -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변경 불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참고

[작성 대상 사업]

-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16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세부 지침]

- 성인지 예산 작성부처는 (i) 성평등 목표, (ii) 사업 총괄표, (iii) 사업별 설명자료(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 포함)를 작성
 - (성평등 목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부처별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기술
 - (사업 총괄표) 회계, 세부사업, '16년 및 '17년 예산현황 작성
 - * 성평등 목표 및 사업 총괄표는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내용 작성
 - * 사업별 설명자료는 해당부처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
-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17년도 예산요구시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와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
 - dBrain 입력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을 표기
 -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이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인 경우, 세부사업과 내역사업 모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으로 표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을 참고

[편성 대상]

- ☐ 국가재정법 제39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건축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시행령 제14조)

< 계속비 예산안 편성 대상 >

1.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2. 재해복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3.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4. 국민편익,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 ☐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 연도별 연부액을 정하여 요구

- ☐ 계속비 예산안 편성 한도(법 제3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

- 부문(장관항 중 관) 예산대비 계속비 예산안 한도와 중앙관서의 시설투자 예산*대비 계속비 예산안 한도는 추후 통보

* 토지매입비(410목), 건설비(420목)

[편성제외 대상]

- ☐ 사업성격상 계속비 예산안 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 낙찰차액 발생 등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사업

- 지방비 등 국고 외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토지 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 타당성재조사 또는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어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잔여 사업기간이 짧아 계속비 예산 편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계연도별 연부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와 관련된 사업유형별 연부액 기준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

[기본원칙]

- ☐ 재정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 ☐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
- ☐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 신설·변경시 고용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

[예산연계 기준]

고용영향평가

-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고용영향평가(고용부)를 실시한 경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 예산 요구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결과, 고용 친화적 정책제언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

고용영향 자체평가

- ☐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자체 제도개선(안)을 예산 요구자료에 포함
 - (대상사업) 부처 주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자체 선정

- ① 주요 일자리 사업('16년 기준 15.8조원, 25개부처 196개 사업)
- ②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 ③ 기타 고용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17년 예산 편성시에는 주요 재정사업(계속사업 100~150개+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 시범실시 → '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 확대

- (평가결과) 예산안 편성시 예산증감(기존사업), 채택여부(신규 사업) 등 사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
- (향후일정) 부처별 평가대상 사업선정 및 담당자 교육(4월말) → 예산 요구(5월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6년 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16.4월 배포 예정)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시 사전협의 의무화

-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기존사업의 지원조건, 사업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부와 반드시 사전협의
 - 각 부처는 소관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용부와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 고용부는 해당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을 감안하여 신설·변경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등을 기재부에 송부

- ☐ 출연대상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국가재정법 제12조),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 ☐ 세출구조조정 관련 유의사항
 -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지원소요 연차별 축소
 - 수지차방식으로 출연금(보조금 포함)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유 자산의 현금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보
 - *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 등 활용가능 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수입에 반영
 - 기금 내 여유재원으로 보증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거나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출연 축소·중단
 -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이하 사업출연금)은 결산 결과未집행분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 재정용자사업

- 수요 부진 등으로 연례적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용자사업 규모 축소 또는 폐지
-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 검토

□ 특별회계·기금 사업

- 연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은 대폭 정비
- 여유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 특별회계·기금의 자체세입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
-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제고

□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사업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17년 당해 사업예산이 감액된 경우, 감액분을 해당 중앙관서의 '17년 예산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에 반영하여 요구 가능

□ 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다음의 입지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입지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반영에서 제외

< 자치단체 대상 국책사업의 입지선정 기준 >

- ① (순수 대형국책사업) 중장기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 없이 부처에서 직접 선정*
 - * 사업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자문·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적용·선정과정 공개로 절차적 합리성 확보
- ② (지역참여형 대형국책사업) 기피·혐오시설 입지 등 지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거치되, 부작용을 최소화
- ③ (지역균형발전사업)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거나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가급적 자치단체·산업계에 선정 위임
 - * 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 공모참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 자치단체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관련 법령 (입지 선정 지침 등)에 위의 입지선정기준을 반영

□ 조세지출예산과 세출예산간 연계

- 세출예산사업 검토시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 존재 여부, 지원규모 등을 파악
 - 세출예산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소관의 조세지출예산 리스트를 제출하고, 사업별 설명서에 조세지출 관련 내용을 필수 기재
 - * 조세지출 건의·평가서에 명시된 관련 예산사업·조세지출 내용, 조세지출 심층평가·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세출예산과 조세지출간 유사·중복이 있는 경우 폐지 또는 재설계 계획 마련

□ ODA 대상 사업

-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와 재정수반 협정, MOU 등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추진
- 각 중앙관서의 장은 ODA 대상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에 사전 제출

* (양자) 유상: 기재부, 무상: 외교부

(다자) 국제금융기구: 기재부, 그밖의 기구: 외교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5.31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송부
- 다만, 국제기구와의 협의, 외교적 여건 변화, ODA 대상 사업으로의 신규 편성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예산 요구 가능

□ 국가지분취득 사업(지분취득비 비목 신설: 400-490)

- (편성대상) 국가가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도 신규 요구사업*

* '17년도 신규사업 중 '16년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하여 총사업비, 지원 비율 등이 이미 결정된 사업은 제외

- (지분취득) 매입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국고지원분만큼 국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
- 사업 운영기간 종료시 매각·회수 또는 타 공공 목적으로 활용

□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시 기존 펀드의 자금 활용 방안(자펀드 청산결과 및 향후 청산계획 등을 포함)을 우선 검토

□ 정원이 증가되어 발생하는 기본경비 및 관련 사업비는 증액없이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 재정수반 법률 제·개정은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추진

- 지출증가·세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개정시에는 상세한 재원조달방안(세출절감 또는 대체재원 발굴)을 반드시 첨부

□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 대상사업 :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

- 협의절차 : 재정전략협의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

*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정부내 협의 · 조정기구

- 협의절차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고지원을 10억원 이상 요청하는 국제행사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라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 '01년 이후 10억원 이상 국고지원을 7회 이상 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 배제

- 사후평가 결과 총관람객 수, 외국인 참여비율 등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불이익 부과

□ 2017년 예산안 요구시 적용할 기준환율

- 美 달러화 및 中 위안화 : '16.3.31일 종가 환율

- 여타 통화 : 한국은행(<http://ecos.bok.or.kr>)에서 발표하는 미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 적용('16.3.31일 종가)

※ 2017년 예산안 최종 적용 환율은 추후 통보 예정

IV

각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보완

-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참고)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보완할 계획임
-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포함하여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보완 요구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협의·보완 요구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중앙관서에 대해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의무 지출이 적정수준보다 과소하게 요구되었는지 여부
- 사업 시행주체간 역할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 중앙관서간 업무 · 기능에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
 - 자치단체 고유사무 또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
 - * (예시)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 중앙과 지방과의 자원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 규제완화 등으로 정책목적이 달성가능하거나 정부개입으로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사업인지 여부
-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 및 지원기준 준수
 - 단계적 예산반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
 - * (예시)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단계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자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 사전협의 등
 - 계획된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율,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별 지원기준이 준수되었는지 여부
 - 재정당국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 재정수반법률,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 국제행사 개최 등 협의시 합의한 사업대상·지원조건·사업내용·비용부담주체 등
 -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민 등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중앙관서간, 유사사업간 지원조건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 부처간 균형이 필요하거나 재정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비목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 * (예시)인건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 세출 구조조정 이행 여부

① 사업 원점 재검토 등 추진

-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군) 및 재정투자 효과가 낮은 사업의 삭감·폐지 여부
- 의무지출 증액 또는 신규 재량지출 요구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

②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 다부처·다기관이 관련된 사업의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된 사업 수행부처로 사업이 통폐합되었는지 여부

③ 구조조정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수준

-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발생한 절감재원은 해당 중앙관서의 '17년 예산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반영

□ 재정사업 전달체계 효율화

- 부정수급 사례 등이 적발된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였는지 여부
- 정부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업이 누락되거나, 관련지원이 중복 수급되고 있는지 여부

□ 세입확보 및 재원관리 측면

-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책수단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예산·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 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
- 조세·수수료 감면 등 세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
-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제시 여부
 - * (예시)대규모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폭 증액시 다른 사업의 구조 조정 계획, 추가 세입확보 방안 등 재원확보 방안 제시

□ 기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 개편 비목에 따라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였는지 여부
-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최소화
 - * (예시) 반복적인 예비비 사용항목은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연례적인 이·전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수행 방식의 전환 여부 등

제3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상 별도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용

-
- ☐ (경제여건)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정책효과 등으로 내수개선과 수출부진 완화 전망
-

※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
- ☐ (수입여건) 자체수입 확대 여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 사회보장 기여금 등으로 인해 전체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사업성 기금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운용수익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 ☐ (지출여건)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구조개혁 뒷받침,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출소요는 확대 전망
-

-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4대 공적연금, 의료비 등의 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 가시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소요 증가

* 24+1 핵심개혁과제 :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임금피크제 확산 등

-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Ⅱ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1

기금운용 기본방향

□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강화

- ICT와 결합하는 융·복합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개혁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강화
- 서민 주거안정 지원과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

□ 재정운용방식을 혁신하고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

- 재량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운용 방식 혁신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 여유자금에 있는 기금에 대한 예산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지원분은 반환 추진
-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지출증가는 자체수입 증가 범위 내로 억제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지출효율화도 병행
- 여유자금은 투자활용 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을 확대하는 등 통합관리 강화

【 미래 성장동력 】

□ ICT 융·복합 산업과 정보보호 강화

- 창의적 아이디어와 ICT 등을 결합한 새로운 시장 창출과 신산업 발굴 등 창조경제 활성화 뒷받침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융·복합 산업과 SW, ICT 분야의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
-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침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민생안정 】

□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보급과 자금지원

-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전세난 완화를 위한 전세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확대
- 행복기숙사 건립 등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의 거주지 비용부담 완화

□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농어가 소득을 보전

- 유통단계 효율화, 수급조절 노력 등을 통해 농수산물 가격안정 도모
- FTA 피해보전 지원확대와 선제적인 가축질병 예방 등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유망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 등을 지원
-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는 등 젊은 세대도 찾는 활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 고용·복지 】

☐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확대

- 청년층에게 기업이 원하는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인턴 경험이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제고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과 진단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의 전과정을 패키지로 지원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 어린이집 확대 등 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

☐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적응 지원

-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육아, 언어교육 등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결혼 이민자 등의 조기 사회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 직업교육 기회 등을 제공

☐ **노동개혁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 세대간 상생고용 등을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 지속

☐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기능 개선**

- 암, 심장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어린이 국가예방 무료접종, 임신·출산 의료비 등을 지원
-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기능조정 등을 통해 공공의료 전달체계 효율화

【 국민안전 】

☐ **범죄·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 보호, 권리보장을 위해 전문상담, 심리치료, 법률구조 서비스 등을 지원
-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와 주거비용 등 경제적 지원 병행
- 성폭력 피해자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과 국선 전담 변호사를 지원

☐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위험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성 평가, 기술지도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

【 문화융성 】

☐ 생활 속의 문화·체육 향유기회 확대

- 지역적·경제적 문화격차를 해소하도록 농·어촌 등 소외 지역에 문화 프로그램 보급 확대
-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체육활동 프로그램 보급 촉진

☐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과 함께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 육성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진입도로 등 인프라의 적기 완공을 지원
-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MICE*·의료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조성

* Meeting(회의), Incentive(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

【 공적개발원조 】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상생형 ODA 추진
- UN의 지속가능개발의제(SDGs*)에 대응하는 지원을 강화

*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제4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I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

1

지침목적

- ☐ 각 중앙관서의 장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점검 항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

2

적용대상

- ☐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
- ☐ 동 지침은 기금으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준용

3

요구절차 및 기한

- ☐ 사전 의견수렴
 - 중앙관서 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 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도 적극 수렴
 - 타 부처 소관 사업과 수혜대상·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또는 의견청취 후 협의된 사항 제출
- ☐ 첨부서류
 -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국가재정법」 제71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수량 등)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 2016~2020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 * 연도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전망

- ** 주요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연도별 지출소요

☐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서 제출기한

-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5.27일까지 국가재정법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에 따른 첨부서류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준용 규정

-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중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관련 있는 부분은 모두 준용

Ⅱ

기금 자원배분 개선 및 건전성 제고 기여

☐ 여유자금에 있는 기금

- 타 회계 등의 전입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존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해당 회계 등으로 반환 추진
- 타 회계 등의 사업 중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으로 이관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확대 및 신규예탁 등 통합관리 강화
- 불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차입)를 억제하고, 기존 예수금은 조기상환 추진

☐ 타 회계 등에서 기금으로 전출

- 기금에 대한 신규 전출금은 원칙적으로 금지
- 기금사업은 기금의 여유재원 및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특정사업을 위한 타회계 등의 지원은 최소화
 -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전출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산정

☐ 재정 외 자금의 재정체계 내 편입

-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을 발굴하여 재정체계 내로 흡수

☐ 공적연금, 사회보험의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화와 장기 재정 안정화 노력 강화

Ⅲ

수입계획 작성지침

1

수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계상
 - 보조금·출연금의 정산잔액, 고정자산매각대, 부담금 징수수수료 등 수입을 철저히 검토하여 모두 수입에 계상
 -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하며,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 적용사례 : 복권사업의 수입금액, 기금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등
 - 총액계상원칙의 예외 : 용자대행기관을 통한 용자사업
 - * 대출금리에서 용자대행 수수료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대행수수료는 지출계획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 특히 여유자금 회수수입은 당해연도 자체수입과 총지출액과의 차이가 아닌 반드시 전체 회수 금액을 계상
- 기금별 수입특성을 감안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 거시경제지표, 최근 수개년 수입실적, 제도변경 요인 등 기금별 특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수입 추계
 - 수입항목별로 전망치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규모가 크거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입은 주요 변수를 반영한 산식·추계모형을 개발·제시

- 기타 산식 적용이 어려운 수입항목의 경우에도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출자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민간부문의 배당성향 및 해당 기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분석하여 반영
 - * 예시 : 최근 3~5년간의 동일업종 배당성향(실적)과 향후 기업체의 수익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그동안 수입실적이 계획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한 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추계방식 개선방안을 제시
-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수입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후 추진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1)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예치금 등)운용 이자수입」과 「융자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산출·계상

□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기준

2017년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기준수익률

○ 미래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장·단기자금간, 일반금융상품과 연기금투자상품 간의 적정 자산배분을 고려하여 산출

* 기준수익률 : 각 기금의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융자이자수입 산출기준

2017년도 각 융자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
(대출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 융자평균잔액은 융자잔액규모, 융자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기금운용계획에 미포함되어 운용중인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하여 산출

2) 융자원금회수

□ 2016년도말 추정 융자잔액 중 2017년도 정기(반기) 회수금액 이외에 만기도래 전 조기회수 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몇 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적정 조기회수율을 추정

3)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 타 회계 등으로부터 전입 최소화

- 수익자 부담원칙 확대, 기 조성 재원, 자체수입 등의 우선활용 등을 원칙으로 하고 타 회계 등의 전입은 최소화
- 여유자금에 있는 기금은 타 회계 등으로부터 전입금을 축소 또는 폐지 추진

☐ 기금수지를 악화시키는 차입금 최소화

- 차입금은 연도별 지출소요 증가율 및 자체수입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되, 최소규모로 한정

☐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원금 회수, 예탁 이자수입 등 정부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간 거래금액을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

4) 여유자금 회수

☐ 2016년도말 현재 기금운용계획상 또는 계획 외로 운용하고 있는 전체 여유자금 중 2017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모든 자금을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 단, 동일한 자금이 단기운용 등으로 인해 연중 1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 연중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계상

☐ 2015년도 미집행잔액 등 결산상 잉여금은 2017년도 수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 2016년도에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2016년도 계획에 반영

IV

지출계획 작성지침

1

지출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 기금수지 개선방안 적극 강구 등 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
 - 원칙적으로 기금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과 비교하여 개선되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요구
 - 기금수지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자체수입 확충방안, 기존사업 구조조정 계획 등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 ☐ 복지제도 및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시 관계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제도'와 보조사업 운용평가 및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 ☐ 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강화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 ☐ '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개편된 비목 변경 내용을 준수
- ☐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구체성 및 재원 대책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요구
 -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 예산·타기금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
 -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대와 부처 자율적으로 절감한 재량지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추진 (재량지출의 10%수준 구조조정)
 -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 수반시, 사업 구조조정 등 해당부처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

-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일자리 투자효과 극대화

□ 유사·중복,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 조정

- 기금·예산간 또는 기금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 하고 예산사업 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제1부 제2편 예산안 편성지침 중 성과평가 대상 사업부분 참조)

□ 공통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업은 절차 준수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관련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목적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경우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불이익 부과

-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건축은 「2017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 요구

- 청·관사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15.9.9일)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 방식을 채택

-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 총비용 관점에서 검토

-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산출내역'을 제출

-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 과다한 재정소요를 유발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국제행사는 최대한 억제
 -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
-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 요구
 -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소요 반영
-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영향, 지역발전에의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
- 법령상 규정된 부담금의 설치목적·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업에 적정소요 반영
- 기금운영비 관리를 효율화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
 -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 편성하고 기금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 기금운영비를 엄격히 관리
- 계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 요구
 - * 보조금·출연금·출자금 등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이를 준용
-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시 기존 펀드의 자금 활용 방안(자펀드 청산결과 및 향후 청산계획 등을 포함)을 우선 검토.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기금운영비 작성기준

1) 인건비

- 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

$$\text{2017년도 인건비 총액} = \text{2016년도 인건비 총액} \times (\text{1+2017년도 인건비 공통 증감율}) + \text{특이 증감소요}$$

- 자연 증가 소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

* (자연증가 소요 예시) 2016년도 인력증원시 6개월분 반영
→ 2017년도 요구시에는 12개월분 반영

- 차년도 처우개선 소요는 추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조정
-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제출

- 인건비 작성기준 적용범위

- 인건비 작성기준은 기금운영비 이외에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출연·보조·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2) 경상운영비

□ 경상운영비 계상범위

-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적 경상지출 경비는 모두 기금운영비로 계상
- 사업비에 경상적 운영비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에 사업비에 포함된 경상적 운영비는 경상운영비로 이관추진

□ 경상운영비 작성방식

$$2017\text{년도 경상운영비} = 2016\text{년도 경상운영비 Base금액} \times (1 + 2017\text{년도 공통 기준율}) + \text{특이 증감소요}$$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로 구분하여 편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
 - 연례적·반복적인 경비로서 '16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경상운영비에 반영된 특이소요를 제외한 금액(경상운영비 Base)을 의미
 - 특이소요
 - 사업비규모 증감에 따른 연동경비, 전년도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자연증가소요 등 특정 연도에만 발생하는 경비 등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영비 요구시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는 추후 공통인상률을 적용할 경비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특이소요는 연동되는 사업비 증감규모 등 증감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실소요 계상

□ 기타 유의사항

- 경상운영비 내에서 각 개별경비의 비목은 예산상의 비목과 일치시켜 작성
- 여유자금 등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경상운영비에 별도 계상

▪ 산출기준

2017년도 위탁자산 평균잔액 × 위탁수수료율

* 위탁자산규모는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다만, 운용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이 약화되거나 수수료 예측이 불가하여 계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직원 복지를 위한 학자금 등 대여사업을 융자금 비목(450목)으로 반영하는 것은 지양

사업비 작성기준

1) 용자사업

- ☐ 용자사업비는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수요 부진 등으로 연례적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용자사업 규모 축소 또는 폐지
 - *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지원 필요성과 집행을 제고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 * 집행가능성이 낮은 용자사업의 과다 계상 금지
 - 자체 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용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를 지양
- ☐ 부처내·부처간 용자사업의 지원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융자기간 등 지원조건을 재검토
 - 지원목적·내용·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
 - 사업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융자조건을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는 사업은 융자조건을 동일하게 조정

2) 투자조합 출자사업

- ☐ 신규출자는 재정출자펀드(투자조합)의 투자진도, 투자 수익률, 기금의 출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재정출자펀드의 설립진도(현 조성액 규모 등)가 계획에 비해 저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 기결성된 재정출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기결성 펀드를 우선 활용하고 신규 출자는 지양
 -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정 출자수익률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출자
 - * 기존 출자조합의 수익률이 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신규출자 제한
 - 민간자금 조성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기금출자의 적정 비율 유지
- 재정출자펀드에 대한 신규출자를 요구함에 있어 아래의 4가지 단계에 따라 재정출자의 적정성 등을 사전 점검
- (자금조성 단계) 목표 조성금액 대비 현 조성액 규모 점검
 - “현 조성액 / 목표 조성액”이 50%이하 일 경우 각 펀드별로 자체점검 실시
 - * 주요 점검항목 : 목표 조성액 및 재원 마련구조의 적절성, 정부·공공기관 출자계획의 현실성 등
 - (자금유치 단계) 민간자금과 공공자금간 매칭비율 확인
 - 민간자금비율이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정출자 보다는 민간자금 유치에 중점
 - * 민간자금 : 정부(예산·기금) 출자금, 공공기관 출자금, 정부·공공기관과 관련된 출자금(예: 정부보증 출자금)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에서 모집한 자금
 - (자금집행 단계) 현 조성액 대비 실제투자액 규모 점검
 - “실제 투자액 / 현 조성액”이 당해 펀드 결성 후 1년이 경과 하고도 50% 이하인 경우에는 재정출자규모를 재검토
 - (투자회수 단계) 투자금액의 회수 여부 확인
 - 하위펀드가 청산되어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출자보다는 자체재원을 적극 활용

3) 청사확보사업

□ 신규사업

- 기금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등 청사 확보는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 자체청사는 임차·매입·신축 등을 비교하여 중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하되 구체적인 비교표를 제출
-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사업기간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드시 제시
 - 특히 청사신축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 順으로 연차별·단계적으로 반영함을 원칙

□ 계속사업

-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당해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 단위면적(m²)당 단가 및 면적기준

- 청사 신축시 m²당 단가의 경우 유사건물의 건축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제출
- 청사확보 면적은 행정자치부의 청사확보기준을 적용

4) 수익사업

□ 신규사업

- 기금의 수익사업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익성 분석 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영 가능
- 다음에서 서술한 첨부자료를 반드시 제출
 -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및 연차별 투자계획
 - * 단, 연차별 투자계획은 단계별 편성원칙(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을 준수하여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추진시 기금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
 - 연차별 투자비 및 예상수입 등을 토대로 실시한 내부수익률(IRR) 등 수익성 분석자료

□ 계속사업

-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정부내부거래 및 차입금 상환 등 작성기준

1) 정부내부거래

□ 정부내부거래는 IMF 통합재정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

- 대상거래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비금융공기업 부문과의 출연, 융자, 예수, 예탁, 예수원금 · 이자 상환, 예탁원금 · 이자 회수

□ 예수금 또는 융자원리금 상환의 경우 상호간 확인을 거쳐 계상 금액을 일치시키고 이자계산방식을 통일

- 내부거래 확인원칙

-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거래하는 기금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기준으로 확인 |
| ▪ 특별회계와 거래하는 기금 | ⇒ | ▪ 당해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확인 |
| ▪ 기금간 거래인 경우 | ⇒ | ▪ 기금 상호간 확인 |

□ 사업성기금은 기금 고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

- 기금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예탁 사유서 별도 제출

2) 차입원리금 상환

□ 차입원리금 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여유자금운용 계상기준

- ☐ 여유자금은 현금성 자산* 중 당해연도에 운용되는 자금으로 전체수입에서 사업비, 운영비 등을 차감하여 계상

* 현금성 자산 : 현금 또는 주식·채권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 ☐ 여유자금은 자금운용 대상에 따라 세분하여 계상하되, '차기이월' 과목은 사용 금지

V

협의 및 보완

-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 사항 (제1부 2편 예산편성지침 참조)」에 따라 각 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보완할 계획
-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별 지출한도 등을 포함하여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보완 요구시 각 기금운용주체는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함